비대면(온라인) 강의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

1. 배경

파주시 평생학습관은 2021년 제1기 교육프로그램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전면 비대면(온라인)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. 강사가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하는 PT자료,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강사의 저작물 또는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. 따라서 강사의 사전 개별이용 동의없이 수업자료를 복제 · 배포 · 전송 · 공유 · 판매하는 경우, **저작권법 제136조**에 따라 민 ·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. 유의사항

가. 허용되는 행위

수강생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. **저작권법 제25조제4항**에 따라서 비대면(온라인) 강의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기간 동안 수업을 위해 강의자료를 복제(다운로드)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합니다.

나. 금지되는 행위

(1) 무단으로 복제(강의자료 내려받기 및 녹화) 또는 내려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(출력물의 경우), 전송(파일업로드), 공유 또는 판매하는 행위

(2) 수강생 외에는 강의자료를 이용 · 복제할 수 없으나, 강의자료가 게시된 홈페이지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, 강의자료를 해킹하거나 임의로 강의를 촬영하여 유포 또는 공유하는 행위

(3) PT강의자료, 동영상 등 각종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, 특히 해외저작물을 포함한 강의자료의 경우, 관계 법령 위반 및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소송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저작권법

제25조(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·배포·공연·전시 또는 공중송신(이하 이 조에서 "복제등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.
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

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(이하 "수업지원기관"이라 한다)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.

제1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2.>

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